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2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2022-38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변경)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1항 산업단지 개요 중 입주(계약) 현황과 제2항 관리 기본계획의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다’ 업종별 배치계획, ‘라’ 사후관리 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
2.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붙임과 같이 한다.

※ 용도별 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상세열람 및 기타 의문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582-1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이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나. 조성목적

- 고부가가치의 전략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 산업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배양
- 건전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생산성과 고용증대

다. 추진경위

- 1965. 2. 2 1차단지 공업지역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387호)
- 1984. 5. 3 1차단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대구직할시 제51호)
- 1987. 4.30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
- 1988. 2.16 지방관리공단 지정(대통령령 제12398호)
- 1988.10. 4 2차단지(1지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대구직할시 제190호)
- 1989. 2. 6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9-7호)
- 1991. 6.19 2차단지(2지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대구직할시 제93호)
- 1991. 6.29 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고시(대구직할시 제100호)
- 1991.11. 6 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변경 고시(대구직할시 제216호)
- 1991.12.27 대구과학산업단지 지정고시
- 1994. 1.17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대구직할시 고시 제1994-4호)
- 1994. 7. 4 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대구직할시 고시 제1994-122호)
- 1994. 8.17 3차1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150호)
- 1998. 5.23 3차2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1998-7호)
- 2002. 3. 9 3차단지 준공 인가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7호)
- 2002. 9.30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176호)
- 2003. 4.20 성서3차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위탁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3-34호)
- 2005. 8. 1 성서3차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177호)
- 2006. 5. 1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97호)
- 2006.11.11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30호)
- 2007. 7.30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
- 2007. 8.20 성서3차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527호)
- 2008. 1.1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호)

- 2008. 3.2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3호)
- 2008. 5.30 성서3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83호)
- 2008.11.30 성서3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90호)
- 2008.12.10 성서3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0호)
- 2009. 1.12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3호)
- 2009. 3.2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53호)
- 2009. 5.20 성서1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92호)
- 2009. 9.10 성서1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5호)
- 2009. 9.21 성서3차산업단지 개발사업(강창교·GMS) 준공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648호)
- 2009.12.30 성서3차산업단지 개발사업(JVM) 준공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648호)
- 2010. 2.1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5호)
- 2010. 2.22 성서3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9호)
- 2010. 6.10 성서1차산업단지 개발사업(삼흥공업사) 준공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419호)
- 2011. 3.1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22호)
- 2011. 4.2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33호)
- 2011. 5.3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53호)
- 2013. 9.23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
- 2013.11.11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39호)
- 2014. 5.30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71호)
- 2014. 8.2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04호)
- 2014.10.2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31호)
- 2014.11.20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50호)
- 2014.11.20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52호)
- 2015. 1.2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3호)
- 2015. 6.1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81호)
- 2016. 9.30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72호)
- 2016. 2.30 성서3차일반산업단지(첨단공기술지원센터)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237호)
- 2017. 7.1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26호)
- 2017. 9.2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0호)
- 2017. 9.29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6호)
- 2017.11.3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99호)
- 2018. 1. 2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237호)
- 2018. 1. 2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승인(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238호)
- 2018. 1.10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자기대허가구역지정해지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4호)
- 2018. 8.1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168호)

- 2018. 8.1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준공인가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903호)
- 2019. 6.10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129호)
- 2019. 12. 2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62호)
- 2020. 9. 7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49호)
- 2021. 3. 2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5호)
- 2021. 6. 10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9호)
- 2021. 10. 2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22호)
- 2021. 11. 22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변경) 승인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5호)
- 2022. 4. 20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93호)
- 2022. 6. 30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
- 2022. 12..30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83호)

라. 분양 현황

구 분	총 면 적 (㎡)	분양가능면적(㎡)				계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9,025,505.2	9,025,505.2	-	-	-	9,025,505.2	1984 ~ 2007	대 구 광역시
산업시설구역	5,723,090.4	5,723,090.4	-	-	-	5,723,090.4		
지원시설구역	393,197.2	393,197.2	-	-	-	393,197.2		
공공시설구역	2,331,849.3	-	-	-	-	-		
복 합 구 역	11,335.0	11,335.0	-	-	-	11,335.0		
공원녹지구역	566,033.3	-	-	-	-	-		

마. 입주(계약) 현황(변경)

구 분	입주(계약) 업체수			면 적(㎡)		
	제조업	비제조업	계	제 조 업	기 타	계
2025년 6월 기준	3,053	266	3,319	5,723,090.4	393,197.2	6,116,287.6

바. 입지 여건(기반시설)

구 분	단 위	소요시설	현 시설
공업용수	천 톤/일	41,000	41,000
전 력	KW	120,263	120,263
통신시설	회선	25,800	25,800
폐수종말처리시설	천 톤/일	80	80
진입도로	Km(폭)	0.8(50m)	0.8(50m)
단지내 도로	Km	102	102
하수도시설	Km	114	114

2. 관리 기본계획

가. 관리 기본방향

- 정밀전자, 정밀기계 및 첨단산업 적극 유치
- 합리적인 공장배치 및 용지의 이용극대화
- 입주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업무 강화
- 근로자 복지 시설확충과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 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및 저탄소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
-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²)

구 분	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	공원녹지구역
합계	9,025,505.2	5,723,090.4	393,197.2	2,331,849.3	11,335.0	566,033.3
1차단지 ^{주1)}	2,687,363.3	1,885,537.6	140,996.6	363,678.1	11,335.0	285,816.0
2차단지 ^{주2)}	4,700,741.4	2,996,018.8	169,377.5	1,456,220.5		79,124.6
3차단지 ^{주3,4,5)}	1,637,400.5	841,534.0	82,823.1	511,950.7		201,092.7

주1) 성서1차산업단지 관리대상 면적은 「성서1차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면적 적용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5호(2021.11.22.)>

주2) 성서2차산업단지 관리대상 면적은 「성서2차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면적 적용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6.30.)>

주3) 성서3차산업단지 관리대상 면적은 「대구성서3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면적 적용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39호(2013.11.11.)>

주4) 성서3차산업단지 관리대상 면적 중 상업시설, 근생시설 및 공동주택, 교육시설 제외

주5) 연구개발특구지역 포함 면적 제외(2차단지/공공 155,849m², 3차단지/산업 736,196m², 지원 147,261.5m², 공공 308,970.2m², 공원녹지 66,336.1m²)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 ①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② 산집법 제2조 13호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그 관련시설(산집법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변경)

-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성서1,2차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다의 3)입주자격 중 다)지원시설구역 ①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③ 성서3차단지 지원시설 중 업무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업무시설, 물류·유통시설용지는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
 - ④ 구.삼성상용차 재개발부지내 상업시설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⑤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단,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범위 내)
-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자원 재생 공사 등 최초 입주계약자는 입주 계약 용도에 의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단.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함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마) 복합구역 :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추가)

1) 업종별 배치 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계	5,723,090.4	
자 동 차 부 품 제 조	42,459.6	
기 타 제 조	5,680,630.8	-

※ 자동차부품 제조업 배치 내역

연번	단지명	소 재 지	면적(m ²)	비 고
합계			42,459.6	
1	성서2차	달서구 월암동 1089-1	7,078.6	
2	성서2차	달서구 월암동 1089-2	6,806.3	
3	성서2차	달서구 월암동 1088	18,012.3	
4	성서2차	달서구 월암동 1088-1	3,483.4	
5	성서2차	달서구 월암동 1088-2	7,079.0	

2) 입주 대상업종(변경)(추가)

①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음(변경)(추가)

업 종 별	입 주 대 상 업 종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타 제조업	<p>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33]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 도장, 피막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인 피혁, 염색, 제지업,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인 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은 입주 제외</p> <p>※ 위험물제조 및 생산공정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p> <p>단, 입주제한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업종이 생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단, 공해업종 추가/변경 및 타업체 물품 사용은 불가능하며, 공장설립완료 신고 시 관련 환경 인허가 필증 제출)</p> <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에너지 시설은 기존 시설만 인정</p>

업종별	입주대상업종
지식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집법 제28조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업종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A0115]으로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제조업 공장등록 완료 후, 생산품 또는 원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에 한해 해체·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단, 압축, 파쇄, 분쇄 제외)을 추가할 수 있다. <p>※ 단,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은 업종 추가 신청시 관리기관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한다. 또한, 기존 제조업 공장 연면적의 1/2 이상 및 최대 1,650㎡ 이상은 불가하며 폐기물 적재는 공장(건물) 내에서만 하고, 위반 시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E383) 업종이 등록 취소되며 업종 추가 신청 시 재신청은 불가함.</p>
부동산업(L68)	비주거용건물임대업(L68112)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공장 등록된 입주기업체에 한함.

- ② 지원시설 구역은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단지 내 입주 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기존업체일 경우 존치를 허용하나 동일 업종으로의 공장 이전은 불가하다.
※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축, 증설하는 경우는 허용(단, 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허가 받은 범위량 내에서 가능)

3) 입주자격(추가)

가) 산업시설구역

-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②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③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건물임대업(L68112)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한 공장등록 기업체에 한함.
- ④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A0115]으로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나) 복합구역

- ①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갖춘자 및 지원시설구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시설구역

-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입주를 제한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2)호, 제9호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17호의 공장, 제20호 폐차장, 제28호 장례식장, 제29호 야영장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폐수·대기를 다량배출하는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발전시설)
-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③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라. 사후관리 계획(추가)(변경)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 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추가)(변경)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500평)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소규모 분할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 억제에 위해 내부 산업용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접속되는 도로의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접속되는 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개선의 자구노력이 인정될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 ※ 단 16,500㎡(5,000평)면적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는 사전에 관리권자(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단지내 조합 및 협동화 사업을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구성원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중 소분류(3자리)가 동일한 기업 구성들에 한한다.

- 조합 및 협동화 사업 설립 전 사업계획을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한다.
- 공장설립(등록)전 매매 및 임대를 금한다.
- 향후, 매매 및 임대시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당시 해당 업종에 한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등록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산집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고 있는 기존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표면처리업종에 한함), 폐수다량배출 업종(염색, 제지업종에 한함)이 성서1차단지(염색, 표면처리, 제지) 내에서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경우 허용 배출량 범위 내(붙임. 1)에서 가능. 단, 확장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표면처리업종에 한함), 폐수다량 배출업종(염색, 제지업종에 한함)에게 임대하거나, 공장등록 완료 후 3년 이내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표면처리업종), 폐수다량 배출업종(염색, 제지업종에 한함)으로 처분·매각 불가
폐수 다량 배출업종(염색, 표면처리, 제지업종에 한함) 확장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제조시설 구역에서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 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관리 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23. 1. 1. 이후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도시계획, 구조고도화,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 계약 체결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유무를 통지하고 승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용하는 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관리권자에게 매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지원

-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물류업체 유치
-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 인력알선센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을 통한 지원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단지내 사회복지회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여성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 체육공원 시설 내에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의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도모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입주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대정부 건의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5) 지원시설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393,197.2	
1차단지 지원시설	140,996.6	
업무시설	17,267.0	·성서복지회관, 한국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 종합비즈니스센터
교육연구시설	1,759.0	
폐기물처리시설	27,650.0	
생활편익시설 ^{주3)}	93,386.6	
수질오염방지시설	934.0	
2차단지 지원시설	169,377.5	
근린생활시설 ^{주1)}	36,197.3	
자동차관련시설	25,808.0	버스차고지, 자동차매매장
행정지원시설	331.8	대전119안전센터
물류유통시설	18,760.0	
노유자 시설	2,440.0	성서어린이집
체육시설	62,237.4	성서체육공원(월암동 1-18일원)
공급처리시설	23,603.0	
변 전 소	21,487.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116.0	시내버스 CNG충전소, 수소충전소(추가)
3차단지 지원시설	82,823.1	
업무시설	19,270.0	
물류유통시설	50,945.1	
공급처리시설	12,608.0	
변 전 소	10,648.0	
송 전 탑	1,960.0	

주1) 성서2차단지 개발계획상 공급처리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장(80,384.2㎡), 하수종말처리장(338,348㎡)는 공공시설 면적에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중 탄약고 부지 제외

주2) 성서3차단지 주거용지 265,538㎡(단독주택, 70,237㎡, 공동주택 172,580㎡, 근린생활시설 22,721㎡), 상업시설용지 181,875㎡, 교육시설용지 51,068.8㎡ 등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주3) 성서1차단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 편의 시설로 변경

붙임. 1

□ 폐수다량 배출 업종(염색업종) 배출량 허용 범위(변경)

연 번	업 체 명	동	번 지	배출량 (m ³ /일)	처리능력 (m ³ /일)	배출율 (%) (배출량/ 처리능력)	기준완화 허용배출량 (m ³ /일)	비 고
	합 계			5,100.6	8,035		11,449	
1	(주)아진IDT	갈산동	355-24	772.6	1,200	64.4	1,800	
2	우림나염	갈산동	400-54	103.8	450	23.1	450	
3	(주)한신타수가공	갈산동	591-8	1,204.7	1,700	70.9	2,550	
4	효성티앤씨(주)대구공장	장동	306-36	1,706.1	2,200	77.6	3,300	
5	대구파일	신당동	1172-5	9.8	35	28.0	35	
6	성창직물	신당동	1178	23.1	150	15.4	150	구. 명보염색
7	(주)삼영섬유	이곡동	1025-1	127.9	200	64.0	300	
8	동일나염	갈산동	355-11	36.8	90	40.9	117	상호변경 (구. 은하섬유)
9	진양산업	신당동	321-116	121.3	150	80.9	255	
10	벽진BIO텍	장동	317-1	21.9	600	3.7	600	
11	삼일샌드	신당동	321-197	50.9	60	84.8	102	구. 유창BIO

※ 배출율별 기준완화 허용배출량 산정표

배 출 율	기준완화 허용 비율(%)	비 고
80%이상	70	
60%이상~80%미만	50	
40%이상 ~60%미만	30	
40%미만	0	

□ 특정유해물질 배출 업종(표면처리), 폐수다량 배출 업종(제지업종) 배출량 허용 범위

연 번	업체명	동	번 지	배출량 (m ³ /일)	처리능력 (m ³ /일)	배출율 (%) (배출량/ 처리능력)	기준완화 허용배출량 (m ³ /일)	비 고
	합 계			1,143.5	1,702.71		2,905.42	
1	한국도금재료공업사	장	333-26	2.2	25.0	8.8	50.0	표면처리
2	협선도금	갈산	365-1	29.6	50.0	59.2	100.0	"
3	신라 도금 조합	갈산	100-65	105.8		104.94	209.88	"
						26.0	52.0	
						60.67	121.34	
					소 계	105.8	191.61	
4	영남 도금 조합	갈산	100-74	179.6		91.25	182.5	"
						73.2	146.4	
						39.2	78.4	
						1.47	2.94	
					소 계	179.6	205.12	
5	현대 도금 조합	장	333-24	153.8		5.2	10.4	"
						36.52	73.04	
						32.46	64.92	
						29.76	59.52	
						39.74	79.48	
						33.5	67.0	
						53.8	107.6	
					소 계	153.8	230.98	
6	신대일제지공업	장	306-89	672.5	1,000	67.2	1,500	제지

※ 수질총량으로 제한하며 처리능력(현재 신청 배출량) 200% 이내로 완화,
단 제지업은 150% 이내로 완화